

산불대책 이렇게하면 어떨까

산불, 정녕 대책 없는가?

최 동 균 / 본지편집자

산불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번 동해안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 국가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되기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처음인것 같다.

필자도 약20여년전(1972년으로 기억) 영림서에 근무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 속칭 어성전산불로 일컬어지는 3000여ha

가 소실된 대형산불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나는 사업주무로 근무하였기에 산불과는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었지만 발화지점과 발화원인행위를 사업지(조림지 - 당시는 대단위 단지조림을 하였다)에서 제공했다하여 문책을 면할 길이 없어 그후 문책인사로 보직변경을 받았고 직접 조림을 담당할 직원은 구속

되고 그는 그로 인하여 공무원생활을 마감한 일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말하려는 것이 본란의 목적이 아님으로 그때의 일은 논외로 하고 다만 그 악몽같은 일로 말미암아 본인은 그 산불이 일어난 음력 3월초하루를 20여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게 되었다. 그 당시를 음력 3월 초하루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음력으로만 기억하는 것이다.

음력 3월초하루를 전후하여 앞뒤고 3~4일, 아니면 4~5일(±4~5)은 항상 동해안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어온다. 당시에 도 쫓차가 대관련을 도저히 넘어올 수가 없을 정도였다.

산불의 발화시기는 주로 봄, 가을이다. 특히 봄철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임업인이면 누구나 경험해본 일이다.

그러나 산불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였음에도 대책은 별무하고 등산로의 폐쇄와 몇가지의 지시사항으로만 계속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본인은 약간의 경험이 있을 뿐이지만 산불이 나면 직접 이해당사자가 산주란 점에서 그 안타까움이란 내 직업상으로도 남다른 점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산림재해예방대책법(가칭)”을 만들어 농림부장관이 비상경계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내용은 길지 않아도 좋다.

첫째 동해안의 산불다발지역에 대하여 시기는 그간의 수십년간의 기상자료를 검토하여 한식(寒食), 청명, 식목일을 전후한 앞뒤로 5일정도(음력 3월 1일±5일)를 특별경계령을 발동케 하는 것이다.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그때가 가장 바람이 거세고 최대의 위험시기다. 이때

만 잘 넘기면 대형산불은 줄일 수 있다. 대형산불은 심한 건조와 거센 바람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산불다발지역의 자연부락단위의 산불감시 조를 편성케하며 이들과 함께 민방위, 예비군, 산불감시원 공공근로요원 등을 집중 투입, 감시활동을 하게하고 이들에게는 특별경계기간동안 국고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제 앞으로의 산림행정은 산불예방에 대하여 최우선과 비중을 두어야 될 때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 동해안의 산불의 교훈도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고성, 속초가 산불의 피해가 심했고 양양을 건너뛰고, 강릉, 동해, 울진, 삼척이 다시 심했다.

양양지역은 왜 괜찮았을까? 우연일수도 있지만 본인이 듣는바에 의하여 양양지역은 송이의 주산지임으로 지자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평소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우연으로만 돌릴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